

外國의 關稅制度(3)

■ 오늘날 國際社會는 自國의 經濟的利益을 최대한 確保
코자하는 世界各國의 보이지 않는 戰爭이 보다 치열
해져가고 있고, 특히 貿易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各國
의 競爭과 摩擦은 貿易障壁에 대한 關心을 급증시키
고 있다.

關稅는 各國의 産業保護와 財政收入 寄與를 위하여
活用되어온 政策手段이라 할 수 있고, 國家間 貿易에
있어 가장 基本的인 障壁으로서의 重要한 役割을 遂
行하고 있다.

本稿는 財務部 關稅局에서 發刊한 資料('92政策資料/
關稅)로서 우리 的 관심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各國의
關稅率 體系 및 關稅 관련 制度에 관하여 整理한 것
이다. ■

V. 濠 洲

1. 貿易 및 關稅制度 概要

가. 貿易概況

- 貿易規模('91基準) : 輸出 世界 22位,
輸入 世界 21位(EC를 1個國으로 간주
시 各各 15位)

- 輸出 : 418億弗→世界 總 輸出의
1.2%
- 輸入 : 412億弗→世界 總 輸入의
1.1%

나. 貿易構造

- 輸出: 1次產品 輸出이 全體의 $\frac{3}{4}$ 차지
· 食品·原料·農產物의 輸出이 全體
輸出의 約 40%로서 主종을 이루고

있으나 그 비중은 減少趨勢

- 燃料· 鑛產物· 非鐵金屬의 輸出比
重은 增加趨勢
- '80年代 以後 1次產品 價格下落으로
輸出構造의 多樣化 必要性을 認識
하고 이를 위한 構造調整政策 推進
- 輸入: 工產品이 대종을 이루고 있음.
- 機械類· 化學製品의 輸入이 全體輸
入의 약 40%를 차지하며 그 비중
또한 增加趨勢
- 石油 및 同 製品의 輸入비중은 '80
年代를 통하여 10% 水準에서 5%
水準으로 減少

貿易 相對國: 日本, EC, 美國이 3大
交易相對國임

○ 輸 出

- 國別 輸出比重에 있어 日本 26%,
EC 13%, 美國 11%의 順임
- 日本과 EC에의 商品輸出의 약
90%, 美國에의 商品輸出의 약
80%가 1次產品임
- 其他 주요 輸出市場: 韓國, 臺灣,
홍콩, 싱가포르, 中國등
- 中國에의 主要 輸出品은 食品과 原
資材이며 韓國·臺灣에는 石炭·羊
毛·알루미늄합금, 싱가포르·홍콩에
는 金 輸出이 주종을 이룸

○ 輸 入

- 國別 輸入比重에 있어 美國 24%,
EC 23% 및 日本 19%의 順임
- 이들 3個國으로부터의 主要 輸入品
은 機械, 自動車 및 同 部分品이며
1次產品 輸入비중은 10% 이하임
-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에 있어서는
'80年代 이후 中東地域으로부터의
輸入비중이 크게 減少한 반면 여타
아시아地域으로부터의 輸入비중은
增加勢를 나타냄

〈表 1〉 輸出入 構造 推移

〈表 2〉 主要 交易相對國別 輸出入 比重

- '88. 1月 HS 品目分類方式 導入
 - 品目轉換에 따른 關稅率 調整으로 單
純平均 關稅率 0.7% 引上效果 發生
 - '88. 5月 關稅引下 豫示制 實施
 - 15%이상 品目→15%씩
 - 10~15% 品目→10%씩⇒1992. 7. 1까지 每年 引下計劃
 - 단, 이전의 政府 결정하에서 段階의
으로 稅率이 引下된 品目は 同 豫示
제에서 除外
 - 中間財의 輸入에 賦課되는 2%의 수
익세(revenue duty)를 1988. 7. 1
부터 廢止
 - 同 豫示제에 의해 高關稅 賦課에 의
한 農産部門保護가 어렵게 됨
- 主要 高關稅 分野
 - 纖維, 旅行用品, 輸送裝備, 非電氣式
機械類, 신발등
 - 輸入品の 70%가 MFN 關稅適用 對象
 - 主要對象國: EC, 美國, 日本등
 - 無稅適用
 - 濠洲와 뉴질랜드간 經濟貿易協定에
의해 1990. 7. 1부터 뉴질랜드로부터
의 모든 輸入品에 대하여 無稅適用(完
全自由貿易化)
 - 無稅輸入中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
比重: 60%('86~'89年)

2. 關稅率 體系

- 關稅率 水準
 - 關稅引下 豫示제에 의해 關稅率은
'92年까지 段階의으로 引下됨
 - 平均關稅率: 10.6%('89)→5.6%('92)

- 輸入額 加重平均稅率은 單純平均稅率보다 낮음
- GATT評價에 따르면 加重平均이 單純平均보다 약 20% 낮은 것으로 推定
- 이는 關稅의 貿易制限效果로 인하여 高關稅品目일수록 輸入額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反映함.

〈表 3〉 主要 分野別 平均關稅率 및 關稅率 範圍

3. 關稅讓許

- 여타 先進國에 비하여 讓許比重이 낮음
 - 現在 品目數 基準 19%, 輸入額 基準으로 37%相當 品目 讓許
 - 특히 工產品의 讓許比重이 農產物에 비하여 낮음
 - 品目數 基準으로 農產物 37%, 工產品 16% 讓許
 - UR協商에서는 全 品目으로 讓許範圍를 擴大하는 Offer를 提出한 바 있음

〈表 4〉 UR協商前後 讓許範圍 比較

4. 加工度別 稅率隔差 (Tariff Escalation)

- 加工度別 稅率隔差는 農產物보다 工產品이 더 큼
 - 工產品의 경우 누진적 稅率隔差가 현저하나 農產物의 경우 加重平均稅率에 있어 半加工品이 基礎產品보다도 낮은 것이 特徵

- 加工度別 稅率隔差는 關稅引下 예시제에 의해 줄어들 展望

〈表 5〉 加工度別 稅率構造

5. 特惠關稅

- 濠洲의 關稅特惠는 ASTP 制度와 쌍무 및 地域貿易協定에 의해 運營
 - ASTP(Australian System of Tariff Preferences)
 -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하여 5% Point의 關稅引下 特惠 賦與
 - 쌍무협정 및 地域貿易協定에 의한 關稅特惠
 - 對象國 : 뉴질랜드, 南太平洋群島國家(Forum Islands Countries), 파푸아뉴기니, 캐나다
 - 同 對象國으로부터의 輸入品에 대한 平均關稅率은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品에 대한 것보다 낮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無稅適用
- 開途國에 대하여 關稅上 特惠를 賦與하고 있기는 하나 實際 輸入構造에 비추어 볼 때에는 開途國이 先進國보다 높은 關稅率을 適用받고 있음
 - 이는 開途國의 主要 輸出品目(纖維·衣類·신발등)이 濠洲의 高關稅分野이기 때문임
 - 纖維·衣類·신발 제외시는 開途國에 適用되는 平均稅率이 先進國에 適用되는 平均稅率보다 낮음

〈表 6〉 各國으로부터의 輸入에 適用되는 關稅率 平均

- 其他 政策的인 關稅特惠 賦與

- 國內에서 生産되지 않는 輸入商品에 대하여 無稅 적용
- 政策的 支援 必要 品目を 法的規定을 통해 支援(無稅, 低稅率)
- 國產部品 使用比率등 特定條件을 만족시키는 輸入品에 低稅率 適用

6. 關稅上 輸入被害 救濟制度

가. 덤핑防止 및 補助金 相計關稅

- 濠洲는 덤핑防止協約 및 補助金·상계 관세協約 가맹국임
- '88. 9부터 덤핑防止關稅와 상계관세를 다루는 專擔機構를 設立하여 調査 및 관세부과권고 권능 부여
 - 豫備調査는 關稅廳이 수행
 - 同 制度下에서 덤핑 또는 補助金 關聯 제조는 실질적 피해 또는 被害우려를 주장하는 國內産業 또는 간접적 影響을 받는 당사자에 의해서 可能
 - 調査後 輸入品에 대한 關稅賦課措置는 最長 3년 이내에 자동적으로 滿了 됨
- 덤핑防止 提訴件數 및 關稅賦課·價格 約束件數는 '80年代 初에 가장 많았으나 '80年代 中반 이후 減少趨勢
 - 調査開始件數 : 100件('82~'83) → 21件('88~'89)
- 상계관세는 덤핑防止關稅에 비하여 빈도가 낮음
 - 調査開始件數 : 9件('82~'83) → 2件('88~'89)으로 減少 趨勢
 - 최종적으로 相計關稅가 賦課된 事例는 '82以後 1件에 不過(주로 價格約束으로 終結됨)

〈表 7〉 덤핑防止 및 相計關稅措置

나. 緊急輸入制限措置(GATT 第19條 Safeguard)

- GATT 19條를 利用한 緊急輸入制限措置 使用에 상당한 變化가 있었음
 - '60~'70年代에 가장 빈번
 - '60年代 : 15件(전체의 2/5)
 - '70年代 : 17件(전체의 1/3)
 - '80年 以後 4件으로 減少
 - '83년 이후 措置를 취한 事例가 없음
- 대부분 措置는 4年以內에 終結됨
 - 特別한 保護가 必要한 경우 보다 長期에 걸쳐 시행된 경우도 있음(例 : 衣類·自動車)
 - 현재 시행중인 措置는 없음

〈表 8〉 緊急輸入制限措置 施行期間別 措置件數

다. 割當關稅(Tariff quota)

- 割當關稅에 의한 保護品目を 크게 TCF品目(纖維·衣類·신발)과 치즈·커드(Curd)로 구분
 - 뉴질랜드와 南太平洋 群島國家로부터의 輸入에 대해서는 割當關稅 適用 배제
- TCF品目에 대한 割當關稅
 - '88年 以後 TCF品目에 대한 割當關稅 計劃이 '89. 3月부터 施行되고 있음
 - 同 計劃은 쿼터 초과분에 대한 罰則稅率(Penalty duty)을 引下함으로써 割當關稅를 점진적으로 廢止할 計劃임
 - 쿼터의 유형에 있어 基本쿼터와 入

札 쿼타로 나누어 適用

- 양 쿼타는 1年(1. 1~12.31)을 單位로 하여 運營
- 基本쿼타: 個人 및 企業의 既存 輸入 實績을 基準으로 割當하며 '92. 2 廢止됨
- 入札쿼타는 政府入札의 경우에 의해 주어지며 자유로이 讓渡가 可能함
- '95년까지 品目群別로 每年 擴大되다가 '95. 6月末에 쿼타廢止 豫定
- 兩 쿼타의 廢止로 TCF品目에 대한 割當關稅制度는 '95. 6月로 廢止 豫定
- 치즈·커피에 대한 割當關稅
 - 최초 배분량은 個別申請者의 基準年度 輸入의 13/12임
 - 쿼타와 基準年度 實績은 他 輸入業者에 讓渡可能
 - 치즈·커피에 대한 割當關稅는 '92. 6. 30에 종료

라. 課徵金·其他 賦課金

- 酒類·담배: 國內產品에 消費稅가 賦課되는 바, 輸入商品에도 關稅에 消費稅를 包含하여 賦課
- 石油製品 一部: 國內 消費稅와 같은 稅率水準의 關稅賦課
- 品目에 따라서는 國內產品에 유리한 稅率構造 設定
 - 과일주스 販賣稅(Sales tax)의 경우
 - 輸入品 → 20% 販賣稅 賦課
 - 濠洲·뉴질랜드·파푸아뉴기니產 原料比率이 25% 以上인 品目 → 10% 販賣稅 賦課

7. 觀察 및 評價

- 濠洲는 아시아地域에 대한 貿易依存度가 높은 편이며 이러한 現象은 APEC

에서 가장 積極的인 역할을 擔當하려는 자세로 나타나고 있음

- '88年 이후 關稅引下豫示制를 實施하여 段階的으로 稅率이 引下되고 이에 따라 加工度別 稅率隔差(Tariff Escalation)도 縮小됨
- 現在 다른 先進國에 비하여 讓許水準이 낮으며 UR協商에 있어서는 全品目으로 讓許範圍를 擴大하는 offer를 提出하였으며 平均關稅率 水準도 關稅引下豫示制에 의해 '92年 5.6%로 내려가는등 전반적으로 關稅障壁이 緩和·下向調整되는 趨勢임
- 뉴질랜드와의 經濟貿易協定에 의해 '90. 7月부터 뉴질랜드로부터의 모든 輸入品에 대하여 무세가 適用되며 그 외에도 自國에서 生産되지 않는 物品에 대하여 無세를 적용하고 있음
- 그러나 纖維·衣類·신발등 開途國의 主要 輸出商品에 대하여 高關稅를 賦課하고 있어 實質的으로는 開途國이 오히려 先進國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關稅障壁에 직면케 되는 隘路發生

VI. 뉴질랜드

1. 貿易 및 關稅制度 概要

가. 貿易概況

- 貿易規模('91基準): 先進國中 輸出入 規模가 가장 작음
 - 輸出: 96億弗 → 世界 總 輸出의 0.27%
 - 輸入: 84億弗 → 世界 總 輸入의 0.23%
- 貿易構造

- 輸出：農産物・原資材가 輸出主宗
分野→全體 輸出의 $\frac{2}{3}$ 차지
- ・主要品目：羊毛, 酪農製品, 肉類
- ・世界 양고기 輸出의 50%, 羊毛輸出의 20% 및 버터輸出의 15% 占有
- ・最近 林産物, 園藝作物, 가죽, 원피의 중요도가 漸增하고 있으며 消費財, 機械類, 事務器機·通信裝備등 工産品 輸出比重도 增大趨勢
- 輸入：工産品 輸入比重이 높음
- ・主要輸入品目：化學製品, 事務器機·通信裝備, 非電氣式機械, 自動車, 半加工品등
- ・自然資源이 풍부하여 1次産品의 輸入比重은 相對的으로 낮음
- ・國際 原油價格下落 및 國內 石油産業發達로 燃料輸入比重은 지난 10年間 22%水準에서 5%水準으로 下落

〈表 9〉 商品構造別 輸出入 比重

- 貿易 相對國
- '60年代까지는 歷史的 要因의 作用으로 英國과의 交易比重이 매우 높았음
- ・輸出의 80%, 輸入의 50% 占有
- 最近 貿易 對象國이 상당히 多邊化됨
- ・EC, 日本, 濠洲, 美國이 主要 交易 對象
- ・英國과의 貿易比重, 특히 輸出比重은 '80年代 以後 현저히 減少
- ・輸出：濠洲와의 自由貿易協定後 濠洲가 最大 輸出市場이 되었으며 위 4個國에 對한 輸出이 全體輸出의 약 $\frac{2}{3}$ 를 차지
- ・輸入：濠洲, EC로부터의 輸入이 各各 總 輸入의 $\frac{1}{5}$ 을 차지

- 開途國과의 貿易比重은 OECD國家의 平均 對 開途國 貿易比重에 比하여 높은 水準임
- ・'80年代 以後 開途國에 對한 輸出 增加率이 其他 國家에 對한 輸出 增加率을 앞지르고 있음
- ・그러나 같은 期間에 있어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增加率은 全體 輸入 增加率에 못미치고 있는 바, 이는 主로 國際 石油價格下落에 따른 石油輸入額 減少에 의한 것임
- ・開途國으로부터의 非石油 輸入은 其他 輸入源으로부터의 輸入에 比하여 훨씬 빠르게 增加하고 있음

〈表 10〉 主要 交易相對國別 貿易比重

나. 關稅制度

- '85以後 國內生産이 되지 않는 모든 品目の 無稅化를 目標로 關稅引下 豫示制 推進
- 86. 7月 및 '87. 7월에 關稅率 25% 이상 品目の 關稅를 一定率씩 引下
- '88~'92間 年度別로 段階的 關稅引下 實施
- 現在 '93~'96間 年度別 段階的 關稅引下計劃 推進中
- ・신발, 카펫, 衣類, 自動車를 除外한 모든 品目の 關稅率을 10%까지 引下 豫定
- '88. 1月 HS 導入·施行
- 品目數에 있어 종전 CCCN하의 2,000 餘個 品目이 7,000個 以上으로 增加
- 關稅收入：절대 金額 및 政府財政收入中 占有比가 모두 減少하는 趨勢

〈表 11〉 關稅收入 및 比重

2. 關稅率 體系

- '88以後 關稅引下 5個年計劃 實施
 - 同 計劃에 따라 '92年까지 대부분 品目이 20% 이하의 稅率로 引下됨
 - 國內産業 育成發展을 위하여 施行하는 産業計劃(Industry Plan) 對象分野는 일반적인 關稅引下對象에서 除外
 - 별도의 計劃에 따라 보다 緩慢한 速度로 關稅引下 豫定

〈表 12〉 年度別 關稅引下 推移

- '92~'96間 關稅引下計劃
 - 大部分 品目的 關稅率을 10%以下로 引下 豫定
 - '92 現在 關稅率이 10%以下인 品目은 追加引下對象에서 除外

〈表 13〉 MFN 稅率構造別 品目比重

- '92년에는 大部分 品目的 關稅率이 20%이하의 範圍에 이르게 됨
 - 大部分의 投入財에 대하여 無稅를 適用하는 반면, 完製品에 대하여는 高率關稅를 賦課하여 부분적으로는 加工度別 稅率隔差가 커지는 傾向을 보임
 - 平均稅率水準은 持續的으로 引下趨勢

〈表 14〉 平均 關稅率 推移

- 關稅의 類型에 있어서는 '90. 7月 一部品目を 除外한 모든 品目的 從量稅를 從價稅로 轉換
 - 從量稅 殘存品目: 酒類, 메타놀, 플라스틱 단추등

3. 關稅讓許

- 品目數 基準 55%, 輸入額 基準 63% 相當品目 讓許
 - 品目數 基準으로는 工產品의 讓許比重이 높지만 輸入額 基準으로는 農產物의 讓許比重이 높음
- UR協商에서는 讓許範圍를 大幅 擴大하는 offer를 提出
 - 品目數 基準 98%, 輸入額 基準 99%로 讓許範圍 擴大

〈表 15〉 UR協商前後 關稅讓許 比較

- 讓許水準은 각 品目群에 따라 多樣함
 - 酪農製品: 品目數 基準 16%, 輸入額 基準 3%
 - 電氣式機械: 品目數 基準 35%, 輸入額 基準 18%
 - 花卉類·植物·菜蔬類: 品目數 基準 97%, 輸入額 基準 100%
 - 穀物·肉類: 輸入額 基準 99%

4. 特惠關稅制度

가. 貿易協定

- 濠洲-뉴질랜드 經濟貿易協定(Australia-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; ANZ CERTA)
 - 1990. 7. 1부터 濠洲로부터의 모든 輸入品에 대하여 無稅적용
- 其他 쌍무협정에 의한 關稅上 特惠 賦與
 - 對象國: 캐나다, 말레이지아, 英國, 南太平洋 經濟協力協定(SPARTA-CA) 회원국인 南太平洋 群島國家 등

나. 一般特惠關稅制度(GSP)

- 146個 開途國에 대하여 關稅特惠 賦與
 - o 이 중 40個 最빈國에 대하여는 모든 輸入에 대하여 無稅 적용
 - o 中國, 臺灣, 韓國이 主要 GSP 受惠 國임
- 全體 輸入에서 GSP 受惠國家로부터의 輸入이 차지하는 比重이 增加趨勢

| | '83~'84 | | '86~'87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|
| 輸入額(百萬NZ\$) | 403 | → | 1,105 |
| 輸入 比重(%) | 4.9 | → | 10.2 |

- GSP 對象 除外品目
 - o 肉類, 魚類, 酪農製品 및 一部農產物, 化學製品, 신발, 가죽, 建築材料, 食器類, 鐵鋼, 自動車, 一部 消費財
- 卒業制度
 - o 國別卒業
 - '85. 3부터 採擇
 - GSP 受惠國의 1人當 GNP가 뉴질랜드 1인당 GNP의 70%에 도달하면 GSP 賦與 철회
 - o 品目別 卒業
 - '89. 7부터 採擇
 - 特定 受惠國으로부터의 年間 特定 品目 輸入이 當該品目の 年間 總輸入의 25%를 초과하는 同時에 이에 따르는 關稅額이 100,000NZ\$를 초과하는 경우
 - 2年 연속 品目別 卒業條件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GSP 재부여 可能
 - 一部 品目은 品目別 卒業對象에서 除外됨

다. 其他 關稅特惠

- 政策的 考慮에 따라 다양한 品目들을

選定, 關稅上 特惠 賦與

- o 適用稅率: 無稅
- o 主要對象分野: 產業用機械, 原材料, 消費財 등

5. 關稅上 輸入被害 救濟制度

가. 덤핑防止 및 補助金相計關稅

- '81년에 補助金協約, '88년에 덤핑防止 協約에 各各 加入
 - o 덤핑防止協約 加入이 여타國에 비하여 늦음 → 輸入許可制度를 통한 國內產業 保護效果로 인하여 덤핑제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임
 - o 輸入許可制度 廢止計劃 樹立以後 덤핑問題에 관심을 가지게 됨
- '88年 덤핑防止·相計關稅法 制定
 - o 90日內에 예비결정 및 豫備決定後 90日內에 최종결정
 - o 關稅賦課 시한(Sunset Clause)은 規定되어 있지 않으나 賦課後 2年內에 덤핑防止·相計關稅의 계속 賦課 與否를 評價토록 規定
- 1982~'90年 사이에 취하여진 덤핑 調査件數는 21件으로 이 중 10件에 덤핑防止關稅 賦課
 - o 대부분 農產物(5件), 금속류(4件), 化學製品(2件)과 관련된 제조였음
 - o 國別로는 21個 調査件數中 10件이 濠洲로부터의 輸入에 대한 것임
- 상계조치에 있어서는 1980年代에 4件의 調査가 개시되었는바, 이 중 濠洲와 關聯된 것이 3件임.

〈表 16〉 '80年代 뉴질랜드의 相計關稅措置

- 濠洲-뉴질랜드 經濟貿易協定에 의해 1990. 9부터 양국사이에 덤핑防止關稅

는 廢止되었으나 상계관세는 계속 賦課可能

나. 緊急輸入制限措置(Safeguard)

- GATT 19條에 依據, 輸入品の 급증에 의해 야기된 國內産業의 실질적 被害가 있을 경우 措置可能
 - o 可能的 措置로는 關稅賦課, 수입할 당, 生産補助金 등이 있으며 12개월 간 適用可能
- GATT 19條下에서 취하여진 緊急輸入制限措置는 '75年 단 한차례였음
 - o '89년에는 신발輸入에 대한 緊急輸入制限措置要求를 기각한 바 있음

6. 其 他

가. 關稅評價

- 뉴질랜드는 GATT/關稅評價協約의 加入國임
- 課稅價格은 f.o.b. 價格을 사용
 - o 海外運送費用, 保險料는 과세가격에서 除外
 - o 단, 內陸運送 및 內陸保險料는 이에 포함

나. 原產地 規定

- 原產地 規定에 관한 일반적인 體系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
 - o 원산지 規定이 요구되는 主要品目은 신발, 의류, 건전지 등임
 - o 特惠關稅(특히 GSP)의 경우 원산지 요건이 요구됨

- 附加價值基準 採擇: 당해 受惠國에서 附加된 가치가 同 製品 總 價額의 50%이상이 되어야 GSP受惠資格 賦與
- 自國産(뉴질랜드) 공여분도 GSP 受惠國을 原產地로 認定

7. 觀察 및 評價

- 뉴질랜드는 關稅引下豫示制를 통하여 關稅率을 引下하고 있으며 UR協商以前에는 讓許水準이 낮았으나 UR協商에서 讓許範圍를 대폭 擴大하는 offer를 제출하였음
- 濠洲와 自由貿易協定을 체결, 동국으로부터의 輸入物品에 대한 關稅를 철폐함으로써 經濟協力 增大를 도모하고 있음
- 濠洲와 北아시아地域으로의 輸出이 急增하는 추세이며 我國의 경우도 뉴질랜드의 主要 交易相對國의 하나임
 - o 濠洲와 함께 APEC에 있어서 積極的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
- 뉴질랜드 政府資料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全體 輸入中 90%이상이 無關稅로 輸入되는 특징을 나타냄('88 基準)
 - o 各種 貿易協定, GSP 등에 의한 無關稅 輸入 → 總 輸入의 53%
 - o 其他 政府의 關稅特惠賦與에 의한 無關稅輸入 → 總 輸入의 40%
- 貿易規模에 비하여 덤핑防止 및 상계조치의 빈도가 높음
→ 國內産業保護를 위한 努力의 一環

〈表 1〉 輸出入 構造 推移

(單位：%)

| | 輸 出 | | 輸 入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'79 | '87 | '79 | '87 |
| 1 次 產 品 | 73.5 | 78.5 | 20.5 | 14 |
| 食 品 | 33.5 | 24 | 5.5 | 5.5 |
| 燃 料 | 12 | 21 | 10.5 | 5 |
| 原 材 料 | 13 | 15.5 | 3 | 2.5 |
| 原 鑛・鑛 產 物 | 9.5 | 10 | 1 | 0.5 |
| 非 鐵 金 屬 | 5.5 | 8 | 0.5 | 0.5 |
| 加 工 製 品 | 20.0 | 19.0 | 77.5 | 81 |
| 化 學 製 品 | 7 | 7 | 10.5 | 11 |
| 鐵 鋼 | 3.5 | 1.5 | 2 | 2 |
| 自 動 車 | 1 | 1.5 | 9.5 | 7 |
| 特 殊 產 業 用 機 械 | 1.5 | 1 | 11.5 | 11 |
| 事 務 器 機・通 信 裝 備 | 0.5 | 0.5 | 4.5 | 8.5 |
| 纖 維・衣 類 | 0.5 | 0.5 | 8 | 7 |
| 家 庭 用 品 | 0.5 | 0.5 | 4 | 4.5 |
| 其 他 機 械・輸 送 裝 備 | 3 | 3 | 14 | 15 |
| 其 他 消 費 財 | 0.5 | 1 | 7.5 | 8.5 |
| 其 他 半 加 工 製 品 | 2 | 2.5 | 6 | 6.5 |
| 其 他 | 6.5 | 2.5 | 2 | 5 |
| 計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
| 金 額(億 弗) | 185 | 254 | 164 | 269 |

〈表 2〉 主要 交易相對國別 輸出入 比重

(單位：%)

| 對象國 / 圈 | 輸 出 | | | 輸 入 | |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'82 | '86 | '90 | '82 | '86 | '90 |
| 美 國 | 10.2 | 10.6 | 11.0 | 21.9 | 22.0 | 24.1 |
| 日 本 | 25.8 | 26.9 | 26.2 | 20.2 | 22.4 | 18.7 |
| E C (12 個 國) | 13.5 | 14.9 | 13.1 | 21.4 | 24.5 | 22.7 |
| 뉴 질 랜 드 | 5.1 | 4.6 | 5.0 | 3.0 | 3.9 | 4.4 |
| 韓 國 | 3.2 | 4.1 | 5.7 | 1.4 | 1.9 | 2.4 |
| 臺 灣 | 2.2 | 3.3 | NA | 2.8 | 3.7 | NA |
| 카 나 다 | 1.6 | 1.7 | 1.7 | 2.3 | 2.0 | 2.1 |
| 홍 콩 | 1.9 | 2.3 | 2.6 | 2.2 | 2.1 | 1.6 |
| 싱 가 폴 | 3.3 | 2.0 | 4.6 | 3.0 | 2.0 | 2.4 |
| 中 國 | 3.8 | 4.7 | 2.5 | 1.3 | 1.4 | 2.7 |
| 先 進 國 | 56.8 | 59.4 | 59.6 | 71.7 | 78.9 | 76.3 |
| 開 途 國 | 36.5 | 35.5 | 36.9 | 27.7 | 20.8 | 23.5 |
| 아 시 아 | 25.7 | 25.6 | 29.8 | 17.0 | 15.9 | 18.2 |
| 아 프 리 카 | 1.1 | 1.1 | 0.6 | 0.7 | 0.6 | 0.4 |
| 유 럽 | 1.1 | 1.4 | 0.9 | 0.4 | 0.5 | 0.4 |
| 中 東 | 7.8 | 6.5 | 4.5 | 8.6 | 2.7 | 3.2 |
| 中 南 美 | 0.9 | 0.9 | 1.0 | 1.0 | 1.1 | 1.2 |
| 蘇 聯 · 其 他 | 6.7 | 5.1 | 3.5 | 0.6 | 0.3 | 0.2 |

〈表 3〉 主要 分野別 平均關稅率 및 關稅率 範圍

(’89基準, %)

| 品 目 | 平均關稅率 | 關稅率範圍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纖維, 衣類 | 22.2 | 0-65 |
| 家 具 | 18.9 | 0-25 |
| 玩 具 | 18.3 | 0-21 |
| 신발, 旅行用品 | 17.7 | 0-4.5 |
| 담배, 穀物, 乳製品 | 0 | 0 |
| 石炭, 天然가스 | 1.8 | 0-17.5 |
| 鑛物, 肥料 | 7.5 | 0-25 |
| 化學製品 | 7.2 | 0-17.5 |
| 水 產 物 | 0.1 | 0-13 |
| 輸 送 裝 備 | 15.6 | 0-42.5 |
| 事 務 器 機 | 14.8 | 0-24.0 |
| 電 氣 製 品 | 16.7 | 0-30.0 |
| 非電氣式 機械類 | 10.7 | 0-42.5 |
| 飲料, 酒類 | 14.4 | 0-30 |
| 花卉類, 植物 | 1.0 | 0-27 |
| 가죽, 原皮, 毛皮 | 9.6 | 0-55 |

〈表 4〉 UR協商前後 讓許範圍 比較

(單位：%)

| | 品目數 基準 | | 輸入額 基準 | |
|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
| | UR前 | UR後 | UR前 | UR後 |
| 農 產 物 | 37 | 100 | 55 | 100 |
| 工 產 品 | 16 | 100 | 36 | 100 |
| 全 體 | 19 | 100 | 37 | 100 |

〈表 5〉 加工度別 稅率構造

(單位：%)

| 區 分 | | 單 純 平 均 | | 加 重 平 均 |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| | '80年代初 | '80年代末 | '80年代初 | '80年代末 |
| 工產品 | 原料(石油除外) | 3.4 | 3.3 | 2.6 | 2.1 |
| | 半 加 工 品 | 6.3 | 5.3 | 4.0 | 4.6 |
| | | 6.7 | 6.7 | 4.9 | 4.2 |
| | 加 工 品 | 16.4 | 15.3 | 11.5 | 10.9 |
| 農產物 | 基礎 產 品 | 4.4 | 4.5 | 3.7 | 2.5 |
| | 半 加 工 品 | 1 | 0.8 | -3.1 | -1.8 |
| | | 3 | 3.5 | 6.3 | 6.6 |
| | 加 工 品 | 8.4 | 8.8 | 6.9 | 7.3 |

〈表 6〉 各國으로부터의 輸入에 適用되는 關稅率 平均

(單位：%)

| | 適 用 稅 率 平 均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| '86~'87 | 90年代 中盤 |
| 뉴질랜드 | 0.5 | 0.0 |
| 캐나다 | 4.5 | 2.5 |
| 南太平洋 群島國家 | 0.2 | 0.0 |
| 파푸아 뉴기니 | 0.0 | 0.0 |
| 其他 開途國 | 10.0 | 7.0 |
| 其他 國家 | 8.0 | 5.5 |
| 開 途 國 | | |
| 全 體 | 12.6 | 8.8 |
| 纖維·衣類·신발제외 | 6.6 | 3.8 |
| 先 進 國 | | |
| 全 體 | 10.7 | 7.6 |
| 纖維·衣類·신발제외 | 10.3 | 7.0 |

〈表 7〉 덤핑防止 및 相計關稅措置

(單位：件數)

| 區 分 | 對 象 國 | 措 置 結 果 | | 措 置 年 度 |
|-----|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| | 關稅賦課 | 價格約束 | |
| 덤 핑 | 日 本 | 1 | 3 | '86(3), '88(1) |
| | 브라질 | 1 | 2 | '87(1), '89(2) |
| | 中 國 | 2 | 1 | '84(1), '88(2) |
| | 벨지움, 韓國, 미국 | 0 | 1 | '88(2), '89(1) |
| | 캐나다, 체코, 獨逸 | 1 | 0 | '86(1), '88(5) |
| | 프랑스, 헝가리, 홍콩 뉴질랜드, 폴란드, 싱가폴, 스위스 | | | '89(4) |
| 補助金 | 뉴질랜드 | 0 | 1 | '87(1) |

※ 年度別 () 內의 數値는 當該 年度에 취해진 措置의 件數임

〈表 8〉 緊急輸入制限措置 施行期間別 措置件數

| 期 間 | 0~2年 | 2~4年 | 4~6年 | 6~8年 | 8~10年 | 10~12年 | 13年以上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措置件數 | 8 | 4 | 1 | 2 | 0 | 2 | 1 |

〈表 9〉 商品構造別 輸出入 比重

(單位：%)

| | 輸 出 | | 輸 入 |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'79 | '88 | '79 | '88 |
| 食 材 | 6.2 | 7.1 | 45.7 | 43.4 |
| 原 料 | 1.9 | 1.4 | 27.9 | 24.3 |
| 燃 料 | 16.0 | 5.4 | 2.1 | 1.3 |
| 電氣式機械·裝備 | 2.6 | 4.1 | 1.1 | 1.5 |
| 其他非電氣式機械 | 9.1 | 9.0 | 1.5 | 2.2 |
| 事務器機·通信裝備 | 3.4 | 11.0 | 0.3 | 0.7 |
| 化 學 製 品 | 12.9 | 12.8 | 3.6 | 4.9 |
| 自 動 車 | 9.3 | 8.6 | 0.6 | 0.5 |
| 其他輸送裝備 | 3.1 | 4.3 | 0.6 | 0.8 |
| 發電用機械 | 2.3 | 1.0 | 0.1 | 0.1 |
| 織 維 | 7.5 | 5.1 | 1.7 | 1.8 |
| 衣 類 | 0.3 | 0.9 | 0.7 | 0.5 |
| 非 鐵 金 屬 | 1.9 | 2.0 | 3.2 | 5.7 |
| 原 鑛 · 鑛 產 物 | 3.5 | 2.8 | 0.7 | 0.5 |
| 鐵 鋼 | 6.2 | 3.2 | 1.1 | 1.2 |
| 其他半加工品 | 6.3 | 8.4 | 7.0 | 5.9 |
| 其他消費財 | 6.8 | 12.0 | 2.1 | 2.7 |
| 其 他 | 0.7 | 0.3 | 0.0 | 2.0 |
| 計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
| 金 額 (億 弗) | 46 | 73 | 47 | 88 |

〈表 10〉 主要 交易相對國別 貿易比重

(單位：%)

| 對 象 國 / 圈 | 輸 出 | | | 輸 入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'82 | '86 | '90 | '82 | '86 | '90 |
| E C (12 個 國) | 22.4 | 19.5 | 15.8 | 18.9 | 22.6 | 19.1 |
| (英 國) | (14.0) | (8.5) | (7.1) | (9.4) | (9.4) | (7.3) |
| 日 本 | 12.7 | 14.6 | 15.8 | 18.1 | 21.1 | 15.4 |
| 濠 洲 | 13.4 | 15.7 | 18.3 | 19.0 | 16.3 | 20.2 |
| 美 國 | 13.6 | 16.1 | 13.2 | 16.1 | 17.5 | 17.8 |
| 中 國 | 1.9 | 3.5 | 1.0 | 0.8 | 0.6 | 1.2 |
| 韓 國 | 1.1 | 1.5 | 4.2 | 1.3 | 1.3 | 2.2 |
| 臺 灣 | 1.3 | 1.3 | NA | 1.1 | 2.3 | NA |
| 카 나 다 | 1.8 | 1.7 | 1.6 | 2.4 | 2.4 | 1.9 |
| 홍 콩 | 1.3 | 1.6 | 1.5 | 1.4 | 1.4 | 1.2 |
| 싱 가 폴 | 1.8 | 1.4 | 1.3 | 4.5 | 2.4 | 1.4 |
| 先 進 國 | 63.5 | 67.3 | 65.4 | 76.5 | 83.0 | 80.2 |
| 開 途 國 | 27.7 | 27.6 | 30.5 | 23.0 | 15.9 | 19.1 |
| 아 시 아 | 17.5 | 17.1 | 19.7 | 16.3 | 12.2 | 12.0 |
| 아 프 리 카 | 1.0 | 1.1 | 1.4 | 0.6 | 0.5 | 0.2 |
| 中 南 美 | 3.6 | 2.9 | 3.0 | 0.9 | 0.9 | 1.2 |
| 유 럽 | 1.3 | 1.8 | 3.7 | 0.8 | 0.3 | 0.2 |
| 中 東 | 4.3 | 4.8 | 2.7 | 4.4 | 2.1 | 5.4 |
| 蘇 聯 · 其 他 | 8.8 | 5.1 | 4.1 | 0.5 | 1.1 | 0.7 |

〈表 11〉 關稅收入 및 比重

(單位：百萬NZ\$, %)

| 年 度 | 關 稅 收 入 | 政 府 財 政 收 入 中 比 重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985 | 795 | 6.67 |
| 1986 | 742 | 5.21 |
| 1987 | 688 | 3.95 |
| 1988 | 847 | 3.93 |
| 1989 | 507 | 2.21 |

〈表 12〉 年度別 關稅引下 推移

(單位: %)

| 1987 | | 1990 | | 1992 |
|------|---|------|---|------|
| 5.0 | → | 4.4 | → | 4.0 |
| 10.0 | → | 8.5 | → | 7.5 |
| 20.0 | → | 15.0 | → | 12.5 |
| 30.0 | → | 20.0 | → | 16.0 |
| 35.0 | → | 22.0 | → | 17.5 |
| 40.0 | → | 23.5 | → | 18.5 |
| 50.0 | → | 27.0 | → | 20.5 |

※ 但, 産業計劃對象品目은 統計에서 除外

〈表 13〉 MFN 稅率構造別 品目比重

(單位: %)

| | '86 | '92 | '96 |
|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0~10% | 48 | 56 | 96 |
| 10~30% | 27 | 35 | 4 |
| 30% 以上 | 24 | 9 | - |

〈表 14〉 平均 關稅率 推移

(單位: %)

| | | '84 | '87 | UR後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農 產 物 | 單純平均 | 14.7 | 14.7 | 7.8 |
| | 加重平均 | 13.6 | 12.0 | 6.0 |
| 工 產 品 | 單純平均 | 18.9 | 17.6 | 13.2 |
| | 加重平均 | 18.6 | 17.2 | 13.2 |

〈表 15〉 UR 協商前後 關稅讓許 比較

(單位: %)

| | 品目數基準 | | 輸入額基準 | |
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
| | UR 前 | UR 後 | UR 前 | UR 後 |
| 全 體 | 55 | 98 | 63 | 99 |
| 農 產 物 | 50 | 89 | 71 | 91 |
| 工 產 品 | 56 | 99 | 63 | 99 |

〈表 16〉 '80年代 뉴질랜드의 相計關稅措置

| 調査開始 | 商 品 | 輸 出 國 | 措 置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'84. 10 | 예 인 선 | 濠 洲 | 조 사 종 결 |
| '87. 2 | 밀 | 濠 洲 | 제 소 칠 회 |
| '87. 10 | Catamaran 船 | 濠 洲 | 상계관세부과 |
| '88. 5 | 유 채 油 | 덴마크, 캐나다, 네덜란드 | 조 사 종 결 |